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513
------	------

2026. 3. 1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2월 9일, 문성호 의원(찬성자 9명)

나.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3. 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문성호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내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신설하거나 혹은 현재 활용 가능한 시설에 청소년의 체육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의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실내·외 시설 이용 보장 근거 마련(안 제16조제10호).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윤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어 청소년을 위한 실내외 시설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생활체육 활동이 증진되도록 발의되었음.

나. 청소년 체육활동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25 국민생활체육조사 보고서>는 청소년 중 다수를 차지하는 10대의 생활체육 참여 비율¹⁾이 2024년 45.9%에서 2025년 43.2%로 전년 대비 2.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민 전체의 생활체육 참여 비율이 2024년 60.7%에서 2025년 62.9%로 전년 대비 2.2%p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임.

- 또한 10대의 생활체육 참여 특성을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도별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는데, 청소년 생활체육 활동 확대를 위해서는 생활권 인근에 접근성 높은 시설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을 살펴보면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1) 전체 중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

공공 또는 민간체육시설의 이용 비율이 가장 높지만, 10대의 경우 학교체육시설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생활체육 증진에 있어 다수가 활용하고 있는 학교체육시설 활성화를 우선하여 고려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청소년 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관 21개, 청소년특화시설 5개 등 총 28개소의 청소년활동시설을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고, 해당 시설들은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단체가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다만 현행 법령상 청소년의 범위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도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우대 이용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청소년 생활체육 진흥(안 제16조제10호)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및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 ----- -----

현 행	개 정 안
<p>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p> <p>1. ~ 9. (생 략)</p> <p><u><신 설></u></p> <p>10. (생 략)</p>	<p>-----</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u>10. 청소년의 체육진흥을 위한 실내외 시설 지원</u></p> <p>11. (현행 제10호와 같음)</p>

- 동 개정안은 서울시 생활체육 진흥에 있어 청소년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청소년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임.
- 「생활체육진흥법」은 국민의 생활체육 권리²⁾를 명시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또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³⁾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현행 조례로 법제화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어 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명시한 동 개정안과 일부 상충되는 면이 있고,

2)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당초 동 개정안의 취지가 청소년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발의되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 수정 의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시 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 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 적인 체육활동의 권장·보 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10. (생 략)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 ----- ----- -----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청소년의 체육진흥을 위한 실내외 시설 지원</u>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 ----- ----- -----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u>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동 개정안의 목적은 시립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청소년의 체육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나,

개정되는 조문의 내용은 시설확대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주요내용

- 서울시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10호).

VI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8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513
----------	------------

제안년월일 : 2026년 3월 6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개정안의 목적은 시립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청소년의 체육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나,

개정되는 조문의 내용은 시설확대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서울시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10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 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 의 권장·보호 및 육성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p> <p>1. ~ 9. (생 략)</p> <p><u><신 설></u></p> <p>10. (생 략)</p>	<p>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 ----- ----- ----- ----- -----.</p> <p>1. ~ 9. (현행과 같 음)</p> <p><u>10. 청소년의 체육진 흥을 위한 실내외 시설 지원</u></p> <p>11. (현행 제10호와 같음)</p>	<p>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 ----- ----- ----- ----- -----.</p> <p>1. ~ 9. (현행과 같 음)</p> <p><u>10. 청소년 체육진 흥을 위한 사업</u></p> <p>11. (현행 제10호와 같음)</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p> <p>1. ~ 9. (생략)</p> <p><u><신설></u></p> <p>10. (생략)</p>	<p>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 ----- ----- ----- -----</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u>10.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u></p> <p>11. (현행 제10호와 같음)</p>